

『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안주찬 의원 외 10명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 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,
-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역 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정착지원에 대한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(안 제1조 ~ 제2조)
- 지원 대상 및 범위 (안 제3조 ~ 제5조)
-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사항 (안 제6조 ~ 제15조)

4. 참고사항
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22조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2조의 2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고,
-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○ 주요 내용은

- 조례에 대한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(안 제1조 ~ 제2조), 지원 대상 및 범위 (안 제3조 ~ 제5조),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사항 (안 제6조 ~ 제15조)등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음.

○ 검토결과

▪ 본 조례안은

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지역협의회 구성으로 유관기관 및 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빠른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【 관 계 법 령 】

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북한이탈주민"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"북한"이라 한다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.
2. "보호대상자"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.
3. "정착지원시설"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
4. "보호금품"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.

제22조(거주지 보호)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·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.

-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③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1. 취학 여부 등 교육현황
 2. 취업직종·근로형태·근속기간·임금수준·근로조건 등 취업현황

3. 주거현황

4.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현황

5.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42조의2(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·운영)

-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 협의회(이하 "지역협의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,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종교단체·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.
- ③ 지역협의회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.